

감천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5. 2. 3. ~ 2. 6.(4일간)
-  감사범위 : 2013. 2. ~ 2015. 2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전반
-  감 사 반 : 법무감사담당 김종삼 외 5명
-  중점 감사내용
 -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 정부지원사업 관련 관리실태
 -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실태 적정여부 등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47건(주의 6, 시정 9, 현지시정 32)
 - 본 처분 15건(주의 6, 시정 9)
- 재정상 조치
 - 4건 1,553,760원
(지급 1건 108,360원, 추정 1건 726,400원, 회수 2건 719,000원)

주요지적사항

1. 청사 보안 점검 소홀

- 예천군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대한 규칙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에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에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최종퇴청 시 보안점검 소홀
-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2.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미비치

- 「지방자치단체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9호 2015.1.22)에 의거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및 관리요령에 맞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3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으며,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미보고(미결재)
-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3. 신용카드 발급대장 미비치

-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9호 2015.1.22.)에 의거 신용카드 보관·관리요령에 맞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2013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 하나(결재) 이행하지 않음
- ▶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4.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행사운영비 집행에 있어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에 관해

지출하여 함에도,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및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비 지급 및 지역특산품 등 구입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5. 물품검사조서 미징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끝나면 이를 확인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생략)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시행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아스콘)외 1건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 인데도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대금 지급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6. 신용카드 사용내역 내부 행정전산망 미공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9호 2015.1.22.)에 의거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신용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나, 2013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건, 이외 9건에 대하여 내부 행정전산망에 미공개

▶ 미공개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7. 환경미화원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부적정

- 예천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에 의거 연차유급 휴가를 미 실시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시 환경미화원 ○○○ 외 1명에 대하여 휴가일수 착오계상으로 108,360원 미지급

▶ 미지급한 연차유급휴가수당 108,360원을 지급하고, 관련법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8.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위반자 과태료 미부과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3년~2014년까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〇〇〇 외 4명에 대하여 686,400원의 과태료를, 신고사항변경신고 지연한 〇〇〇 외 1명에 대한 40,000원의 과태료 미부과

- ▶ 미부과한 과태료 726,400원에 대하여 부과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9. 영농안전장비 농가공급 부적정

- 농정과-4033(2014.03.11.)호 및 농정과-7646(2013.05.21.)호와 관련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 영농작업시 농약, 돌 등으로 인한 중독, 상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영농안전장비를 농가에 공급하여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지원하는 영농안전장비는 읍·면에서 자체기준을 마련 최근 3년간 지급된 사실이 없는 농가를 우선 배정하고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특정인에 매년 연속하여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배정하여야 함에도, 2013~2014년까지 농약안전 사용장비 총 657세트를 농가에 배정하면서 2013년 7농가, 2014년 19농가에 연속지급으로 중복 공급하였음
- ▶ 농가공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다음연도 공급시 활용하고,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0.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과다 징구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신청인이 1,000㎡미만의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할 수 있으나, 2013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취득자가 신청당시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26건을 발급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첨부토록하여 구비서류 과다 징구
- ▶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

11.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관리대장 사후관리 소홀

- 농정과-3274(2012.02.24)호 및 농정과-2436(2013.02.13)호와 관련 과실 채소류 등의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조절 및 가격을 안정시키고, 상품성을 제고

하기 위한 농가형 저온저장고지원 사업 완료 후 읍·면에서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2012 ~ 2014년 현재 총 42동의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완료 후 생산량, 활용수량, 조수익 등 시설활용 상황 등을 매년 조사 기록하여야 하나 기록치 않고 사후 관리 소홀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2. 의사무능력자 현금지출내역 확인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5편 수급자 관리 규정에 의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급여가 수급자에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관리)하고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내용에는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되 고령 등 여건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이 구술로 확인하여 기재함으로서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2013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의사무능력자 2명에 대한 급여 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현금지출에 대한 지출내역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3.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소홀

- 예천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지도하고 있으며, 준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에 대하여 청소 기한이 도래하면 1개월전에 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청소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여야 함에도, 2013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엽서를 발송함에 있어 신규 대상자와 전년도 청소이행자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며, 미청소자에 대해서 독촉도 하지 않음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지도를 소홀히 하였음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년도 미실시자를 재조사하여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4. 공사비 과다계상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적용 기준,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2014. 3. 26. ~ 2014. 5. 14.까지 ■■■■(주) ○○○과 계약하여 시공한 □□2 마을입구 재포장공사 공사에 대하여 2m이하의 옹벽을 설치함에 있어 비계 설치품이 필요하지 않고, 실제 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 설명판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여야 하나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합계 468천원 과다 계상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468,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15. 공사비 과다계상

- 건설공사를 설계 시행함에 있어 건설표준품셈, 공사원가계산 적용기준, 현장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고, 시공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조치하여야 하나, 2013. 3. 13. ~ 2013. 4. 11까지 (주)◆◆◆◆ ○○○와 계약하여 시공한 위 공사에 대하여 현지 여건상 포장 거푸집 일부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준공 처리하기 이전 현장 상태를 기초로 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합계 251천원 과다 계상
- ▶ 과다 지급된 공사비 251,000원을 회수하고, 준공검사 시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이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